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1
----------	------

제출연월일: 2019.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관련 단순용어 변경 (안 제1조 ~ 제6조)

- 1) 1~3급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2) 4~6급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장애등급 → 장애정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7. 4. ~ 2019.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
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의 1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1~2등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의 2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3~4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한다.

별표 중 3란을 삭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4급~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1급~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th> </tr> <tr> <td colspan="6">1. 인적 사항(해당란에 ☑표시)</td> </tr>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성 별</td> <td style="width: 15%;">남 · 여</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td> </tr> <tr> <td>장 애 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td>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급</td> </tr> <tr> <td>수급유형</td> <td colspan="5">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td> </tr> <tr> <td colspan="6">2. 수리 신청내용</td> </tr> <tr> <td>보조기구 종 류</td> <td colspan="5"></td> </tr> <tr> <td>수리가 필요한 부위</td> <td colspan="5">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td> </tr> <tr> <td colspan="6" style="padding: 10px;"> <p>「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p> <p>(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동구청장 귀하</p> </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5px;">※ 구비서류 :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colspan="5"></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r> </table>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 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구 종 류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p>「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p> <p>(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동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p>[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정도</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colspan="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4"></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colspan="4"></td> <td></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		--		--	--	--	-----					--		장애정도				--	-----					-----												-----					-----							-----											--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 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구 종 류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p>「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p> <p>(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동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		--	--																																																																																																																																																		
--	-----																																																																																																																																																						
--		장애정도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센터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급유형	
			장애명 및 등급	
수리내역	이동기기 종 류		비용 청구 금액	천원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p>「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리지원센터 대표</p> <p>(서명 또는 인)</p> <p>성동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수수료	---
			없 음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	
--	주소		장애명 및 정도	
--			--	
-----		-----		

-----				---
				--

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p> <p>[별표]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5조 관련)</p>		<p>제6조(사업의 의무)-----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심한 장애인</u>----- ----- ----- -.</p> <p>[별표]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5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장애인</th> <th>65세이상</th> <th>한부모가족</th> <th>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th> <th>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th> <th>북한이탈주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장애인 1~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장애인 ·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요하는 ·55세이상으로 생활 곤란자</td> </tr> <tr> <td>2</td> <td>장애인 3~4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장애인 5~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p>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 1~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요하는 ·55세이상으로 생활 곤란자	2	장애인 3~4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5~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장애인</th> <th>65세이상</th> <th>한부모가족</th> <th>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th> <th>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th> <th>북한이탈주민</th> </tr> </thead> <tbody> <tr> <td>-</td> <td>심한 장애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삭제>	<삭제>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 1~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요하는 ·55세이상으로 생활 곤란자																																																			
2	장애인 3~4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5~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삭제>	<삭제>																																																								

제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9조(센터의 이용)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대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p> <p>5.·6. (생략)</p>	<p>제19조(센터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p> <p>5.·6. (현행과 같음)</p>

제4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제8조제2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용료 구분</th> <th rowspan="2">대상</th> <th rowspan="2">기본 사용료</th> <th colspan="6">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th> </tr> <tr> <th>주 1회</th> <th>주 2회</th> <th>주 3회</th> <th>주 4회</th> <th>주 5회</th> <th>주 6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영장 (1일 1회)</td> <td>성인</td> <td>5,100</td> <td>18,500</td> <td>37,800</td> <td>54,400</td> <td>68,200</td> <td>80,000</td> <td>91,300</td> </tr> <tr> <td>청소년</td> <td>3,500</td> <td>11,600</td> <td>27,000</td> <td>40,000</td> <td>46,900</td> <td>55,900</td> <td>62,500</td> </tr> <tr> <td>어린이</td> <td>2,700</td> <td>9,300</td> <td>20,400</td> <td>31,200</td> <td>37,200</td> <td>43,500</td> <td>48,400</td> </tr> <tr> <td rowspan="3">체육관 등 (1일 1회)</td> <td>성인</td> <td>3,700</td> <td>13,000</td> <td>26,600</td> <td>40,100</td> <td>48,400</td> <td>57,200</td> <td>64,700</td> </tr> <tr> <td>청소년</td> <td>2,700</td> <td>10,800</td> <td>19,200</td> <td>29,100</td> <td>35,500</td> <td>43,000</td> <td>48,500</td> </tr> <tr> <td>어린이</td> <td>2,300</td> <td>10,000</td> <td>17,000</td> <td>24,200</td> <td>30,100</td> <td>35,200</td> <td>40,300</td> </tr> <tr> <td rowspan="2">테니스장</td> <td>성인 (1년2회기준)</td> <td>10,000</td> <td colspan="6">월 150,000</td> </tr> <tr> <td>청소년 (어린이)</td> <td>5,000 (1년2회기준)</td> <td colspan="6">월 100,000</td> </tr> </tbody> </table>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 1회)	성인	5,100	18,5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육관 등 (1일 1회)	성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인 (1년2회기준)	10,000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년2회기준)	월 1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용료 구분</th> <th rowspan="2">대상</th> <th rowspan="2">기본 사용료</th> <th colspan="6">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th> </tr> <tr> <th>주 1회</th> <th>주 2회</th> <th>주 3회</th> <th>주 4회</th> <th>주 5회</th> <th>주 6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영장 (1일 1회)</td> <td>성인</td> <td>5,100</td> <td>18,500</td> <td>37,800</td> <td>54,400</td> <td>68,200</td> <td>80,000</td> <td>91,300</td> </tr> <tr> <td>청소년</td> <td>3,500</td> <td>11,600</td> <td>27,000</td> <td>40,000</td> <td>46,900</td> <td>55,900</td> <td>62,500</td> </tr> <tr> <td>어린이</td> <td>2,700</td> <td>9,300</td> <td>20,400</td> <td>31,200</td> <td>37,200</td> <td>43,500</td> <td>48,400</td> </tr> <tr> <td rowspan="3">체육관 등 (1일 1회)</td> <td>성인</td> <td>3,700</td> <td>13,000</td> <td>26,600</td> <td>40,100</td> <td>48,400</td> <td>57,200</td> <td>64,700</td> </tr> <tr> <td>청소년</td> <td>2,700</td> <td>10,800</td> <td>19,200</td> <td>29,100</td> <td>35,500</td> <td>43,000</td> <td>48,500</td> </tr> <tr> <td>어린이</td> <td>2,300</td> <td>10,000</td> <td>17,000</td> <td>24,200</td> <td>30,100</td> <td>35,200</td> <td>40,300</td> </tr> <tr> <td rowspan="2">테니스장</td> <td>성인 (1년2회기준)</td> <td>10,000</td> <td colspan="6">월 150,000</td> </tr> <tr> <td>청소년 (어린이)</td> <td>5,000 (1년2회기준)</td> <td colspan="6">월 100,000</td> </tr> </tbody> </table>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 1회)	성인	5,100	18,5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육관 등 (1일 1회)	성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인 (1년2회기준)	10,000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년2회기준)	월 100,000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 1회)	성인	5,100	18,5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육관 등 (1일 1회)	성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인 (1년2회기준)	10,000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년2회기준)	월 100,000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 1회)	성인	5,100	18,5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육관 등 (1일 1회)	성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인 (1년2회기준)	10,000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년2회기준)	월 100,000																																																																																																																																																																		
비 고	<p>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p> <p>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p> <p>3. 사용료 할증</p> <p>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p> <p>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p> <p>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p> <p>①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p> <p>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p> <p>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p> <p>④ 단체(10명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30퍼센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13세 이하 1명 이상 포함)의 부모와 자녀 중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4급~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퍼센트</p> <p>⑤ 가입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p> <p>⑥ 성동구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30퍼센트</p> <p>5. 개인·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p> <p>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p>	비 고																																																																																																																																																																			

제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9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p> <p>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u>1~3급 장애인</u>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p> <p>2. 3. (생략)</p> <p>⑤ (생략)</p>	<p>제19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 ----- <u>심한 장애인</u>-----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제6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2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p> <p>3. ~ 8. (생략)</p>	<p>제12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p> <p>3. ~ 8. (현행과 같음)</p>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단순 용어 변경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회8급 정윤 (02-2286-5428)

< 관 계 법 규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경오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19. 8. 16. /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 8. 19.

다. 상정일자: 2019. 8. 28.

(제247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복지국장

나.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관련 단순용어 변경(안 제1조~제6조)

(1) 1급~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4급~6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장애등급 → 장애정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7. 4. ~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내용으로
 -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4급에서 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아래 표는 이번 심사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조례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변경하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별표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1~2등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의 2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3~4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별표 중 3란을 삭제하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9조 제3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의 비고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4급~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4항제1호 중 “1급~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따라 이를 폐지하고,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없애는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였고,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에 맞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